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6.17(화)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 2014. 6. 20(금)

다. 상정일자 : 2014. 6. 20(금)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상하수도 사업소장 천장호)

-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의 개정은 자치법규 규제개선 반영과 안전행정부 권고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표준안을 일부 반영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세제곱미터당 단위사업비를 결정”하고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통해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을 “해당 공사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선·철거”를 “보수·철거”로, “소요비용을 당해”를 “비용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손괴하거나”를 “파손하거나”로, “수선”을 “보수”로, “손괴예방”을 “파손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은 단수로 인하여”를 “함은”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손괴”를 각각 “파손”으로,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괴 또는 손괴”를 “파손 또는 그”로,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를 “상수”로, “손괴”를 “파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손괴예방”을 “파손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로, “[별표 1]”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소요되”를 “드”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별표 1]”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5”를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고,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제6항 중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

면 군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손괴”를 각각 “파손”으로,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를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괴하지”를 “파손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를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손괴자부담공사”를 “파손자부담공사”로, “손괴자”를 각각 “파손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괴자”를 “파손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요구시”를 “요구 시”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